

「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윤경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 : 강승수 의원 외 22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·여가·문화생활을 확산하고,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, 오락,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아동의 교육·여가·문화생활(안 제11조)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
- 나. 부서검토: 아이돌봄과 의견제출(붙임)
- 다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아동의 교육·여가·문화생활을 확산하고, 놀이와 휴식, 문화·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발달권과 놀이·문화 향유권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, 관련 시설 확충 및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
- 또한, 조문 번호 및 장 체계를 정비하고, 기존 조례에 있던 ‘사회복지국장’, ‘미래교육돌봄국장’ 등의 직위를 ‘아동 관련 업무 담당 국장’으로 통일하여 업무 담당 부서의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별도의 추가 재정수반 없이 기존 예산을 활용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개정 취지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놀이·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,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.